

1990 년도 지방토론회(광주편)

## 언론의 자유경쟁과 윤리적 책임

안광식

이화여대 신방과 교수 중매위원

6·29 선언 이후에 언론은 법적·구조적·내용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지난 30년 동안의 「권위주의적 언론통제의 시대」가 사라지고, 언론이 다원화와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자유경쟁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일간신문의 경우 발행지면수와 구독료를 제한하던 「카르텔제도」가 깨지면서 현재 중앙지들의 경우 하루에 평균 20~24면, 때로는 최고 32면으로까지 발행하는 증면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또한 3년 전에 비해서 획기적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근 30년 동안 시행되어 오던 일요일 휴간제가 없어지고 각 신문들이 모처럼 증면경쟁을 벌임으로써 이제야 신문들이 비로소 획일성을 좀 벗어나면서 독자적으로 개성있는 지면면을 꾸밀 수 있는 자유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언론의 전환기를 맞아 현시점에서 언론의 자유경쟁이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부정적·역기능적인 측면도 적지않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언론의 제 1의 사명은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 어떤 사건과 사회적 과정에 관한 「사실」을 잘 보도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의 여부를 때로는 밝혀내지 못한 채 보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언론보도에 있어 기본 문제로 지적된다.

언론이 불명예스럽게도 오보를 가끔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불신을 받아왔던 신문·방송·잡지가 더욱 체면을 스스로 깎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어떤 때는 오보에 의한 허위사실이 밝혀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미디어가 오보를 해 놓고도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채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황의 여하에 불구하고 오보 또는 허보가 빈번해지면 허위적 사실에 의한 분위기가 이 사회에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그밖의 대중매체들은 오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짊어져야 할 줄 알아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언론풍토에서는 아직까지도 대개의 경우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받기지 않고, 비록 정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언론의 수처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오보를 자주하면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에서 나온 발상 때문인지 모르겠다.

한편 보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미디어에서의 선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선정주의는 수용자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그들을 자극시키면서 오락성을 추구하는 기능이 강하며, 선정주의의 추구는 긴장완화 또는 불만해소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미디어에서의 선정주의는 또한 수용자들에게 값싼 낭만성을 조성해 주고, 흥미본위의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호기심과 화제거리를 조성해 주고 있다.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의 과오 또는

침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려는 동시에 언론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그 책임을 촉구하려는 것을 그 취지와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언론중재제도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무방비상태에 있던 언론침해를 구제하여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중재제도는 언론침해를 당했을 때 누구나 부담 없이 간편하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피해자와 언론사 모두가 시간과 비용을 안들이고 쌍방의 이익을 위해서 유리하게 선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중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무슨 결정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명백한 허보나 오보 또는 언론침해에 대한 정정을, 법원 판결을 통하여 해결하는 최종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자는 것이다. 법원을 통하는 번잡한 절차를 양지 않고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 신청인뿐만 아니라 언론사측에도 편의를 제공해 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된다. 그리고 중재위원회의 기능이 최근까지는 주로 정정보도 신청에 의한 시시비비를 판별해주는 중재역할을 하고 더 이상의 기능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언론의 비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언론침해의 문제를 심의, 명백한 불당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하는 기능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제 6 공화국이 태어난 이래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회복되면서 동시에 언론의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적 전환기에 처해서 언론중재제도가 더욱 필요해지고 활성화될 수 밖에 없다는 당위론이 현실화되고 있다.

어떻든간에 아무리 언론이 자유경쟁의 체제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침해와 횡포, 무분별한 역기능적, 반사회적 보도와 제작을 사회가 그대로 방치, 묵인할 수도 없으며, 또한 언론이 진정한 보도의 가치를 스스로 찾지 못하고 최소한의 자율적 윤리의 의무와 책임마저 포기한다면 사외에서의 심의와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계속 유지, 보완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윤리적 과제가 따르게 된다.

그러나 사외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보다는 옴부즈맨제(평가인) 및 외부의 전문인들과 내부의 언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체심의·평가제도의 보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신문방송의 전문지들을 통한 미디어비평가 매체 수용자들의 평가와 압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싶다.

끝으로 언론의 자유경쟁의 시대를 맞아 윤리적 책임의 제고는 언론의 신뢰도와 공신력을 높이고 언론의 가치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언론이 진실을 추구하고 인간의 기본권리를 존중하며, 공중과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언론이 이와 같은 윤리적 책임을 좀 더 인식, 이행함으로써 언론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된다.

□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졸 (저널리즘 전공)

□ 저술 「신문과 정부와의 갈등」 「커뮤니케이션과사회 변동」 (역), 「세계의신문」 (공저)외 논문 다수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